

2019 회계연도 삼척시 기금성과분석 보고서



사 적 시

목 차

| 1. | 재정안정화기금 | | 3 |
|----|-------------|--------------|----|
| 2.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 | 8 |
| 3. | 노인복지기금 | | 14 |
| 4. | 장애인복지기금 | | 20 |
| 5. | 양성평등기금 | | 26 |
| 6. | 재난관리기금 | | 31 |
| 7. | 농어업소득기금 | | 36 |
| 8. | 식품진흥기금 | | 42 |
| 9. | 옥외광고발전기금 | | 46 |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설치근거 : 지방재정법 제14조, 삼척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안정적인 재정운영 도모

○ 설치연도 : 2019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 ′18년말 | ′19년도 운용현황 | | | ′19년말 | ′20 է | 년도 운용 | 계획 | 비고 |
|-------|------------|----|-------|-------|-------|-------|----|----|
| 조성액 | 수입 | 지출 | 증감 | 조성액 | 수입 | 지출 | 증감 | 비고 |
| - | 5,000 | - | 5,000 | 5,000 | 32 | - | 32 | |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9년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50억원을 예치하여 운용중
- 2020년도에는 100억원을 추가 예치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사용
- 정부 재정정책 기조에 따라 재정 불균형 조정 및 안정적인 재정 운영 효과를 도모하고 있는 만큼 기금 존치 필요성은 높다고 판 단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 ′18년도 | | | ′19년도 | | |
|-------|------|----|-------|------|----|
| 당초계획 | 집행실적 | 비율 | 당초계획 | 집행실적 | 비율 |
| - | - | - | - | - |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 구 분 | 사업계획 | 사업실적 | 달성도 |
|------|------|------|-----|
| ′18년 | - | - | - |
| ′19년 | _ | _ | - |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2020년도에는 100억원을 추가 예치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 급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하는 등 재정 불안정성에 대응하여 재정안정 화 도모가 가능하였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 작성내용 >
 - 기금의 설치목적

| 설치근거 | 설치목적 | 주요사업 내용 | 목적 달성 정도 | 비고 |
|--|--------------------|--------------------------|----------|----|
| 지방재정법 제14조, 삼척시 재정안정화기 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안정적인 재정운영 도모 | 여유 재원을 적립하여 재원 부족시 사용 | - | |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재원 부족의 경 우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해당 사안 발생시 사용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정부 재정정책 기조에 따라 재정 불균형 조정 및 안정적인 재정 운영 효과를 도모하고 있는 만큼 기금 존치 필요성은 높다고 판 단됨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반회계 여유 재원(경상일반재 원 및 순세계잉여금)을 전입 받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대내외 경제불안정성, 재정분권 등 정부 재정 정책 변화에 따른 연도간 재정 불균형 조정 및 예상치 못한 재정 위기에 탄력적 대응을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 | 구 분 | ′17남 | 1 | ′18년 |] | ′19년 | |
|-----|-----------------|------|---|------|----|---------------|-------|
| | 합계 | | % | | % | 5,000,013,690 | 100 % |
| | 전입금 | | | | | 5,000,000,000 | 100% |
| | 보조금 | | | | | | |
| | 차입금 | | | | | | |
| 수 입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
| Т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
| | 예치금회수 | | | | | | |
| | 예수금 | | | | | | |
| | 이자수입 | | | | | 13,690 | 0% |
| | 기타수입 | | | | | | |
| | 합 계 | | % | | /% | 5,000,013,690 | 100% |
| | 비융자성사업비 | | | | | | |
| | 융자성사업비 | | | | | | |
| | 인력운영비 | | | | | | |
| | 기본경비 | | | | | | |
| 지 출 | 예탁금 | | | | | | |
| | 예치금 | | | | | 5,000,013,690 | 100% |
| |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
| | 기타지출 | | | | | |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설치근거 :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 조례제정일 : 1995. 1. 7.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 ′18년말 | '19년도 운용현황 | | ′19년말 | ′20 ર | 크도 운용 | 계획 | nj – | |
|-------|------------|-----|-------|-------|-------|----|------|----|
| 조성액 | 수입 | 지출 | 증감 | 조성액 | 수입 | 지출 | 증감 | 비고 |
| 684 | 11 | 0.3 | 10 | 695 | 12 | 20 | △8 | |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9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추진실적

| 신청자 | 지급대상자 | 지급금액 | 비고 |
|-----|-------|----------|-------------------------------|
| | | | · 수혜자 1명 : 타 장학금 200만원 미만 수혜로 |
| 4명 | 1명 | 385,000원 | 차액분 지원 |
| | | | · 제외자 3명 : 타 장학금 200만원 초과 수혜자 |

○ 잘된 점

- 국가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 지원사업이 확대로 수혜 대상이 감소함에 따라, 대상자 확대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당초 타 장학금 100만원 초과 수혜자 지급 제외에서 타 장학금 200만원 미만 수혜자는 그 차액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급 근거를 마련·조례를 개정하였음(2019. 9월). 또한, 장학금 운용계획 및 지급대상자 선정 시 삼척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용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음

○ 미흡한 점

- 장학금 지급 제외사유를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하였으나 (타장학금 200만원 미만 수혜자에 대한 차액분 지급),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의 대학생 자녀의 경우 국가장학금 및 타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연간 200만원 이상 지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임에 따라 그 효과가 미비하였음

○ 총괄 및 향후 조치계획

-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학금 지원대상 조건을 완화하여 타 장학금 200만원 미만 수혜자도 차액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국가장학금 등 동일목적의 다양한 장학사업 확대로 저소득 가구 대학생의 경우 연간 200만원 이상의 학비보조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수혜자는 여전히 극히 낮은 실정임. 따라서 장학사업의실효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기금 존치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 ′18년도 | | | ′19년도 | | |
|-------|------|-----|-------|------|------|
| 당초계획 | 집행실적 | 비율 | 당초계획 | 집행실적 | 비율 |
| 20 | 2 | 10% | 20 | 0.3 | 1.5%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 구 분 | 사업계획 | 사업실적 | 달성도 |
|------|----------------------|----------------------|-------------|
| ′18년 | ○ 장학금 지원(20백만원, 10명) | ○ 장학금 지원(2백만원, 1명) | (10%, 10%) |
| ′19년 | ○ 장학금 지원(20백만원, 10명) | ○ 장학금 지원(0.3백만원, 1명) | (1.5%, 10%) |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충분한 학비보조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최대 200 만원 까지의 장학금을 보장하여줌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과 학업성 취력 향상에 기여하였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설치근거 | 설치목적 | 주요사업 내용 | 목적 딞 | 달성 정도 | 비고 |
|----------------------------|-----------------|---------------------|------|-------|----|
|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 저소득가구 자립에 기여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 | 하 | |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 구 분 | | 지 적 내 용 | 비고 |
|--------------|------|----------|----------|
| フレスフレバ | ′17년 | 해당없음 | |
| 각종감사 기정시하 | ′18년 | 해당없음 | |
| 지적사항 | ′19년 | 성과분석 미심의 | 강원도 종합감사 |
|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 | 해당없음 | |
| 대한 결과(권고조치) | | опожъ | |
| 7] | 타 | 해당없음 | |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 사 업 명 | '20년 사업비 | 존치 필요성 | 불가피성 정도 |
|---------------------|-------------|--|---------|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 20,000,000원 | 동일 목적의 장학 사업 확대로 수혜자가 극히 감소. 존치여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하 |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 사업명 | 금액 | 비고 |
|--------------|---------------|------------|----|
| 해당 기금 |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 20,000,000 | |
| 911 0 7 1 12 | 지원사업 | 20,000,000 | |
| | 다자녀가정 | 35,000,000 | |
| | 대학등록금지원 | 33,000,000 | |
| 일반·특별회계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 68,000,000 | |
| 예산사업 |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 00,000,000 | |
| 11 12 1 1 11 |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 14,186,000 | |
| | 이통장 자녀 장학금 | 30,000,000 |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 성격 및 규모
 - 재원조성 : 조성목표액(5억원) 달성 후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 규 모

(단위: 백만원)

| | | | | , | — — / |
|---|-------|-----------|----------------|------------|-------|
| 1 | 19년도말 | '20년 이자수입 | '20년 장학금 지급 계획 | '20년도말 조성액 | 비고 |
| | 조성액 | (수입) | (지출) | 20년도달 소생택 | 111/ |
| | 694 | 12 | 20 | 686 |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을 작성
 - 삼척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 우수자와 예 체능계 경연대회 우수 입상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저소득층 의 학비부담을 경감, 학업 성취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1995년부 터 본 장학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함
 - 그러나 국가장학금 제도가 활성화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대부 분의 저소득층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저소득주 민자녀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극히 감소하게 됨
 - 따라서 2019년 조례 개정(당초 100만원 이상 타 장학금 중복수 혜 시 지급 제외→200만원 이상 타 장학금 수혜 시 지급 제외 /200만원 미만 수혜 시 타 장학금 지급액을 제외한 차액분을 지급)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 조건을 완화하고 장학금 지원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보장하고자 하였으나 그 효과가 미비하였음. 이에 향후 기금 운용에 있어 장학사업의 실효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그 존치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원)

| | 구 분 | ′17년 | | ′18년 |] | ′19년 | 그기 : 전) |
|-----|-----------------|-------------|-------|-------------|-------|-------------|---------|
| | 합 계 | 680,801,148 | 100% | 686,100,571 | 100% | 695,144,461 | 100% |
| | 전입금 | | | | | | |
| | 보조금 | | | | | | |
| | 차입금 | | | | | | |
| 수 입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
| | 예치금회수 | 671,397,046 | 98.6% | 676,801,148 | 98.6% | 684,100,571 | 98.4% |
| | 예수금 | | | | | | |
| | 이자수입 | 9,404,102 | 1.4% | 9,299,423 | 1.4% | 11,043,890 | 1.6% |
| | 기타수입 | | | | | | |
| | 합 계 | 680,801,148 | 100% | 686,100,571 | 100% | 695,144,461 | 100% |
| | 비융자성사업비 | 4,000,000 | 0.5% | 2,000,000 | 0.3% | 385,000 | 0.1% |
| | 융자성사업비 | | | | | | |
| | 인력운영비 | | | | | | |
| | 기본경비 | | | | | | |
| 지 출 | 예탁금 | | | | | | |
| | 예치금 | 676,801,148 | 99.5% | 684,100,571 | 99.7% | 694,759,461 | 99.9% |
| |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
| | 기타지출 | | | | | | |

노인복지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삼척시 노인복지 증진 기여

- 설치년도 : 1996. 1. 3.(조례 제0170호)

- 조성기간 : 1997 ~ 2005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 ′18년말 | '19년도 운용현황 | | ′19년말 | '20년도 운용계획 | | 비 고 | | |
|-------|------------|----|-------|------------|----|-----|----|-------|
| 조성액 | 수입 | 지출 | 증감 | 조성액 | 수입 | 지출 | 증감 | P 1/ |
| 560 | 19 | 20 | △1 | 579 | 21 | 22 | △1 | |

II.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노인대학운영 지원 : 3개소 10,350천원 / 경로당회장 간담회 2,370천원 / 게이트볼대회 3,740천원 / 노인지도자 연찬회 3,540천원 등 총 20,000천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여가생활 보장 및 노인복지증진에 기여

○ 기금의 존치 필요성

- 시 재정축소에 따른 전입금 감소와 기금이자의 이율 하락으로 사업 축소가 당분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민 후원모금 등을 통하여 기금조성 확대 방안 검토 필요 - 기금설치 목적이 적정하고 중복되는 유사한 사업이 없으며, 지금 까지 많은 재원이 투자된 노인대학 운영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전환되어 타 사업운영에 안정적인 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금 존치가 타당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 ′18년도 | | | ′19년도 | | |
|-------|------|------|-------|------|------|
| 당초계획 | 집행실적 | 비율 | 당초계획 | 집행실적 | 비율 |
| 17 | 17 | 100% | 20 | 20 | 100%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노인복지기금 사업은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보장과 문화생활 혜 택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며, 수혜자인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 구 분 | 사업계획 | 사업실적 | 달성도 |
|------|---|---|------|
| ′18년 | ○ 대한노인회삼척시지회 5개 사업(11백만원, 200명) ○ 도계장로교회 1개 사업(4백 만원, 26회) ○ 늘푸른노인대학 1개 사업(2 백만원, 26회) ○ 청솔요양병원 1개 사업(2백 | 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5개 사업(11백만원, 220명) 도계장로교회 1개 사업(4백만원, 26회) 늘푸른노인대학 1개 사업(2백만원, 26회) | |
| ′19년 | 만원, 26회) ○ 대한노인회삼척시지회 5개 사업(12백만원, 200명) ○ 도계장로교회 1개 사업(4백 만원, 26회) ○ 늘푸른노인대학 1개 사업(2 백만원, 26회) ○ 청솔요양병원 1개 사업(2백 만원, 26회) | 대한노인회삼척시지회 5개 사업(12백만원, 200명) 도계장로교회 1개 사업(4백만 원, 26회) | 100%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설치근거 | 설치목적 | 주요사업 내용 | 목적 달성 정도 | 비고 |
|---------------------------------------|--------|--|-------------|----|
|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노인복지증진 | 1. 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5.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6.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비용 7. 각급 노인회의 지도 육성 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 삼척노인회보 발간 10.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100% | |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100%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 구 분 | | 지 적 내 용 | 비고 |
|---|-------|----------|------------|
| יון די די די | ′17년 | 해당없음 | |
| 기 정 기 정 기 정 기 정 기 정 기 정 기 정 기 정 기 정 기 정 | ′18년 | 해당없음 | |
| 지적사항 | ′19년 | 성과분석 미심의 | ७१६ इब्रीभ |
| 기금운용 | 성과분석에 | 해당없음 | |
| 대한 결과(권고조치) | | 에 성 xi 급 | |
| 7] | 타 | 해당없음 |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현행유지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 사 업 명 | '20년 사업비 | 존치 필요성 | 불가피성 정도 |
|----------------------|----------|--------|---------|
| ① 노인대학운영 | 10,000천원 | 필요 | 상 |
| ② (사)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운영지원 | 2,000천원 | 필요 | 상 |
| ③ 노인지도자 직무교육 | 4,280천원 | 필요 | 상 |
| ④ 경로당회장 간담회 | 1,720천원 | 필요 | 상 |
| ⑤ 노인회장기 친선게이트볼대회 | 4,000천원 | 필요 | 상 |
| 합계 | 22,000천원 | 필요 | 상 |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여부 : 적정(출연금 및 이자)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 : 기금존치 필요
 - 2005년까지 5억원 조성 후 2006년부터 기금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시 전입금 감소, 기금이자율 하락으로 개별사업에 대한 축소 검토가 필요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원)

| | 구 분 | (17) | <u> </u> | (10) | 1 | | (단위 : 원) 9 |
|-----------|-----------------|-------------|----------|-------------|----------|-------------|---------------|
| 구 분 | | '17ৼ | <u>'</u> | '18 ਦ | <u>!</u> | '19 ਦ | <u>!</u> |
| | 합 계 | 575,247,173 | 100% | 576,722,478 | 100% | 579,377,058 | 100% |
| | 전입금 | 9,500,000 | 1% | 11,000,000 | 1% | 11,000,000 | 1% |
| | 보조금 | | | | | | |
| | 차입금 | | | | | | |
| 수 입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
| | 예치금회수 | 556,904,413 | 97% | 557,931,173 | 97% | 560,036,478 | 97% |
| | 예수금 | | | | | | |
| | 이자수입 | 8,838,170 | 2% | 7,791,305 | 2% | 8,340,580 | 2% |
| | 기타수입 | 4,590 | | | | | |
| | 합 계 | 575,247,173 | 100% | 576,722,478 | 100% | 579,377,058 | 100% |
| | 비융자성사업비 | 17,316,000 | 3% | 16,686,000 | 3% | 20,000,000 | 3% |
| | 융자성사업비 | | | | | | |
| | 인력운영비 | | | | | | |
| | 기본경비 | | | | | | |
| 지 출 | 예탁금 | | | | | | |
| | 예치금 | 557,931,173 | 97% | 560,036,478 | 97% | 559,377,058 | 97% |
| |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
| | 기타지출 | | | | | | |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

삼척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장애인 복지 증진

- 설치년도 : 2004년(조례제정일 2004년 5월 18일 조례제459호,

조례개정일 2014년 7월 18일 조례제866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 ′18년말 | ′19년도 운용현황 | | ′19년말 | '20년도 운용계획 | | 비고 | | |
|-------|------------|----|-------|------------|----|----|----|--------------|
| 조성액 | 수입 | 지출 | 증감 | 조성액 | 수입 | 지출 | 증감 | H <u>1/</u> |
| 560 | 9 | - | 9 | 566 | 10 | 10 | - | |

Ⅱ. 분석결과

1. 총 평

○ 현재 장애인복지기금사업은 장애인행사지원 위주로 사업시행 중으로 일반회계 상 장애인 행사 및 교육 지원사업과 중복되며 단체에서도 예산 사용 절차 등의 문제로 기금보다 일반회계 보조금 신청을 선호하는 등 기금존치필요성이 낮으나 우리 시 조례 상 존치기한이 2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21년까지 존치 후 폐지할 예정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 | ′18년도 | | ′19년도 | | | |
|------|-------|------|-------|------|----|--|
| 당초계획 | 집행실적 | 비율 | 당초계획 | 집행실적 | 비율 | |
| 8 | 8 | 100% | 9 | - |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 구 분 | 사업계획 | 사업실적 | 달성도 |
|------|----------------------------|----------------------------|------|
| ′18년 | ○ 장애인합창대회 (8백만원, 인원40명) | ○ 장애인합창대회 (8백만원, 인원40명) | 100% |
| ′19년 | - | - | - |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또는 활동에 적극 지원하여 장애인복지에 기여
- 19년도 미실시(일반회계 보조금으로 지원)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설치목적

| 설치근거 설 | 설치목적 | 주요사업 내용 | 목적 달성 정도 | 비고 |
|--------|--------------|--|----------|----|
| | 장애인 -지 증진 | 가.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상담・세미나 등행사 지원 나.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사업 지원 다. 장애인단체의 건전하고합리적인 사업 지원 라. 재가장애인복지사업 지원 마. 장애인 취업 지원 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지원 사.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과관련한 사업 또는활동 지원 | _ | |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2004년 삼척시 장애인복지기금이 조성 되어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여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해 왔으나, 2019년도에는 기금사업 미실시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 구 분 | | 지 적 내 용 | 비고 |
|--------------|---------------|----------|--------|
| フレスフレバ | ′17년 | 해당없음 | |
| 각종감사 기정기청 | ′18년 | 해당없음 | |
| 지적사항 | '19년 성과분석 미심의 | | 강원도종합사 |
|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 | 해당없음 | |
| 대한 결과(권고조치) | | आ ठ ४४ च | |
| 7] | 타 | 해당없음 |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존치 필요성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 사 업 명 | '20년 사업비 | 존치 필요성 | 불가피성 정도 |
|---------|----------|--------|---------|
| 장애인합창대회 | 10,000천원 | 없음 | 하 |

4. 사업의 유사성

-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 사업명 | 금액 | 비고 |
|-----------------|-------------------|-----------|----|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장애인 행사 및 교육 지원 | 117,600천원 |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되어 존치 필요성 낮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 : 삼척시 출연금 및 이자수입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현재 장애인복지기금사업은 장애인행사지원 위주로 사업시행 중으로 일반회계상 장애인 행사 및 교육 지원사업과 중복되며 단체에서도 예산 사용 절차 등의 문제로 기금보다 일반회계 보조금 신청을 선호하는 등 기금존치 필요성이 낮으나 우리 시 조례상 존치기한이 2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21년까지 존치 후 폐지할 예정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원)

| 구 분 | | ′17te | <u> </u> | ′18년 | | ′19년 | |
|-----|-----------------|-------------|----------|-------------|------|-------------|------|
| | 합 계 | 565,051,546 | 100% | 564,777,406 | 100% | 566,064,326 | 100% |
| | 전입금 | | | | | | |
| | 보조금 | | | | | | |
| | 차입금 | | | | | | |
| 수 입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
| 一 日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
| | 예치금회수 | 556,223,936 | 98% | 556,551,546 | 99% | 556,877,406 | 98% |
| | 예수금 | | | | | | |
| | 이자수입 | 8,827,610 | 2% | 8,225,860 | 1% | 9,186,920 | 2% |
| | 기타수입 | | | | | | |
| | 합 계 | 565,051,546 | 100% | 564,777,406 | 100% | 566,064,326 | 100% |
| | 비융자성사업비 | 8,500,000 | 2% | 7,900,000 | 1% | | |
| | 융자성사업비 | | | | | | |
| | 인력운영비 | | | | | | |
| | 기본경비 | | | | | | |
| 지 출 | 예탁금 | | | | | | |
| | 예치금 | 556,551,546 | 98% | 556,877,406 | 99% | 566,064,326 | 100% |
| |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
| | 기타지출 | | | | | | |

양성평등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삼척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38조

- 설치목적 : 양성평등 이념 실현 및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권익증진

- 설치년도 : 2001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 ′18년말 | ′19년도 운용현황 | | ′19년말 | '20년도 운용계획 | | ען ד | | |
|-------|------------|----|-------|------------|----|------|----|----|
| 조성액 | 수입 | 지출 | 증감 | 조성액 | 수입 | 지출 | 증감 | 비고 |
| 1,365 | 43 | 32 | 11 | 1,408 | 75 | 74 | 1 | |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업에 대해 공모절차 를 통해 지원하고 남녀 복지·권익증진을 위한 시업에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임
- 기금의 안정적 확보와 운영을 위해 시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전입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9년에는 양성평등 지원 공모사업으로 7개사업에 32백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양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인력 양성, 건강가정 육성, 저출산 극복 등의 가족정책 사업 등에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 향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분야의 다양화·구체화를 통해 관련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 | ′18년도 | | ′19년도 | | | |
|------|-------|-----|-------|------|-----|--|
| 당초계획 | 집행실적 | 비율 | 당초계획 | 집행실적 | 비율 | |
| 43.1 | 41.9 | 97% | 33 | 32 | 97%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 구 분 | 사업계획 | 사업실적 | 달성도 |
|------|--|--|-----|
| '18년 | ▶ 선진 문화교류를 위한 해외 연수(24백만원) ▶ 행복한 결혼식(5백만원) ▶ 가족사랑 수기공모(4.6백만원) ▶ 다문화가족을 위한 향토음식 만들기사업외1(5백만원) ▶ 청소년과 함께하는 차문화 힐링체험 (3백만원) ▶ 위풍당당 생리대지원사업 (1.5백만원) | ▶ 선진 문화교류를 위한 해외 연수(22.8백만원) ▶ 행복한 결혼식(5백만원) ▶ 가족사랑 수기공모(4.6백만원) ▶ 다문화가족을 위한 향토음식 만들기사업외1(5백만원) ▶ 청소년과 함께하는 차문화 힐링체험 (3백만원) ▶ 위풍당당 생리대지원사업 (1.5백만원) | 97% |
| '19년 |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지역 벤치마킹(8백만원)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5백만원)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 동거가정 행복한 결혼식(5백만원) 가족사랑수기 공모 및 시상식 (5백만원) 위풍당당 생리대지원사업 (1.5백만원) 청소년과 함께 하는 차(茶)문화 힐링체험(3백만원) 다문화가정을 위한 향토음식 만들기외1(5백만원) |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지역 벤치마킹(8백만원)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5백만원)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 동거가정 행복한 결혼식(4.1백만원) 가족사랑수기 공모 및 시상식 (5백만원) 위풍당당 생리대지원사업 (1.5백만원) 청소년과 함께 하는 차(茶)문화 힐링체험(3백만원) 다문화가정을 위한 향토음식 만들기외1(5백만원) | 97%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및 달성 정도

| 설치근거 | 설치목적 | 주요사업 내용 | 목적 달성정도 | 비고 |
|--|------|---|------------|----|
| 양성평등 기본법 제42조 삼척시 양성 평등기본조례 제38조 |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양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인력양성, 건강가정 육성, 저출산 극복 등의 가족 정책사업 | 상 | |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 구 분 | | 지 적 내 용 | 비고 |
|-------------|-------|----------|----------|
| 각종감사 | ′17년 | 해당없음 | |
| | ′18년 | 해당없음 | |
| 지적사항 | ′19년 | 성과분석 미심의 | 강원도 종합감사 |
| 기금운용 | 성과분석에 | 해당없음 | |
| 대한 결과(권고조치) | | 애 영 없 급 | |
| 7] | 타 | 해당없음 | |

《기금 존치의 필요성》

(단위 : 천원)

| 사 업 명 | '20년 사업비 | 존치 필요성 | 불가피성 정도 |
|---|----------|--------|---------|
| ① 삼척시 여성지도자 역량강화교육 (여성이 열어가는 양성평등 리더쉽) | 4,000 | 필요 | 중 |
| ② 마을안전지도 만들기(우리마을 등불 프로젝트) | 3,370 | 필요 | 상 |
| ③ 여성친화도시 홍보 캠페인 (우리함께 만들어가요 여성친화도시 삼척) | 4,800 | 필요 | 상 |
| ④ 위기가정 멘티·멘토사업(꿈트리 멘토링) | 5,000 | 필요 | 상 |
| ⑤ 저소득, 다문화, 장애인, 취약계층 가족사진 제작(행복 찰칵 가족사랑 만들기 프로젝트) | 5,000 | 필요 | 상 |
| ⑥ ATRI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 (양성평등 성인지 문화확산 사업) | 5,000 | 필요 | 상 |
| ⑦ 유아 차(茶)상머리 예절 인성교실 (존중, 배려, 바른마음-건강한 가정의 첫걸음) | 5,000 | 필요 | 상 |
| ⑧ 찾아가는 양성평등 인형극 ("성평등이 뭐예요 ?") | 5,000 | 필요 | 상 |
| 합 계 | 37,170 | 필요 | 상 |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양성평등과 정책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기금 존치 필요
- 기금 공모사업에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연례 반복적인 사업에서 탈피하여 여성친화사업, 양성평등 실현 정책 사업발굴 및 추진에 집중하여 기금 운영의 효과성 제고
- 기금지원 사업에 대한 운영 및 집행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기금운용 사업에 발전 도모하겠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원)

| | | | | 1 . | | | <u>(단위 : 원</u> · |
|----------|-------------|---------------|------|---------------|------|---------------|---------------------|
| 구 분 | | '17년 | | '18년 | | '19년 | |
| | 합계 | 1,316,823,039 | 100% | 1,407,145,019 | 100% | 1,407,751,059 | 100% |
| | 전입금 | 8,000,000 | 0.6% | 100,000,000 | 7% | 20,000,000 | 1.4% |
| | 보조금 | | | | | | |
| | 차입금 | | | | | | |
| 수 입 | 융자금회수(이자포함) | | |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
| | 예치금회수 | 1,288,100,809 | 98% | 1,289,094,639 | 92% | 1,365,245,019 | 97% |
| | 예수금 | | | | | | |
| | 이자수입 | 20,722,230 | 1.6% | 18,050,380 | 1% | 22,506,040 | 1.5% |
| | 기타수입 | | | | | | |
| | 합 계 | 1,316,823,039 | 100% | 1,407,145,019 | 100% | 1,407,751,059 | 100% |
| | 비융자성사업비 | 27,728,400 | 2% | 41,900,000 | 3% | 31,600,000 | 2% |
| | 융자성사업비 | | | | | | |
| | 인력운영비 | | | | | | |
| 지 출 | 기본경비 | | | | | | |
| /기 현 | 예탁금 | | | | | | |
| | 예치금 | 1,289,094,639 | 98% | 1,365,245,019 | 97% | 1,376,151,059 | 97% |
| |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
| | 기타지출 | | | | | | |

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삼척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 조례제정일 : 2005. 1. 10.(삼척시 조례 제483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 ′18년말 | '19년도 운용현황 | | | ′19년말 | ′20 남 | 년도 운용 | 계획 | שן ד |
|-------|------------|-----|-----|-------|---------------|-------|------|------|
| 조성액 | 수입 | 지출 | 증감 | 조성액 | 수입 | 지출 | 증감 | 비고 |
| 2,096 | 400 | 491 | △90 | 2,497 | 380 | 550 | △170 | |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태풍(미탁) 피해 응급복구공사 : 394,029천원
 - 무더위쉼터 간판 정비 : 1,820천원
 - 제설 장비 구입 : 95,833천원
- 잘된 점
 - 각종 재난대비 간판정비 및 태풍 "미탁"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 공사를 통하여 재난 예방 및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 제설 장비를 구입하여 겨울철 폭설 시 신속한 제설 작업에 사전대비

○ 기금의 존치 필요성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하여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재난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장비 구입 등을 위해 기금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 ′18년도 | | | ′19년도 | | | |
|-------|------|-----|-------|------|-----|--|
| 당초계획 | 집행실적 | 비율 | 당초계획 | 집행실적 | 비율 | |
| 240 | 108 | 45% | 802 | 491 | 61%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 구 분 | 사업계획 | 사업실적 | 달성도 |
|------|---------------------------|--|-----|
| |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시업(115백만원) | ○ 태풍(콩레이) 피해 복구공사(3.3백만원) | |
| | ○ 물놀이 취약지역 예방시업(5백만원) | ○ 무더위쉼터 간판 수리수선비(2백만원) | |
| | ○ 지진해일 대피간판 정비사업(5백만원) | ○ इन्क िक्स प्रदेश प्रमुख्य | |
| ′18년 | ○ 급경시지·무더위쉼터 간판정비시업(5백만원) | ○ 지진해일대피 및 급경사지붕괴위험 | 45% |
| | ○ 제설장비구입(100백만원) | 지역 표지판 정비사업(1.7백만원) | |
| | ○ 재난대비 장비임차(5백만원) | ○ 제설장비 구입(100백만원) | |
| | ○ 재난대비훈련(5백만원) | | |
| | | | |
| |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시업(700백만원) |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시업(394백만원) | |
| ′19년 | ○ 급경시지·무더위쉼터 간판정비시업(2백만원) | ○ 급경시지·무더위쉼터 긴판정비사업(2백만원) | 61% |
| | ○ 제설장비구입(100백만원) | ○ 제설장비구입(95백만원) | |
| | | |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설치근거 | 설치목적 | 주요사업 내용 | 목적 달성 정도 | 비고 |
|---|---------------------------------|--|-------------|----|
|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삼척시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조례 (삼척시 조례 제483호) |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소요 되는 비용 충당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재난원인분석 및 침수흔적조사, 침수흔 적도 작성・보존 등의 사업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등 | | |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2-② 참조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 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 사 업 명 | '20년 사업비 | 존치 필요성 | 불가피성 정도 |
|------------------|----------|--------|---------|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 100백만원 | 신축적 집행 | 상 |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재난관리기금은 원칙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사용 시기가 비정기적이며 재원 규모가 한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예측이 가능한 재난 예방사업은 원칙적으로 기금사용을 지양하고 정규예산으로 편성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 발생 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 토록 함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거,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고 수습하기 위해서는 매년 일정액의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적립해야 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원)

| | 구 분 | ′17년 | | ′18년 | | '19년 | 단위 : 원 |
|-----|-----------------|---------------|------|---------------|--------|---------------|--------|
| | 합계 | 2,108,062,037 | 100% | 2,202,686,417 | 100% | 2,497,220,667 | 100% |
| | 전입금 | 348,020,000 | 17% | 308,796,000 | 14.02% | 353,789,000 | 14.16% |
| | 보조금 | | | | | | |
| | 차입금 | | | | | | |
| 수 입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
| | 예치금회수 | 1,726,767,607 | 82% | 1,893,394,637 | 85.96% | 2,096,230,117 | 83.94% |
| | 예수금 | | | | | | |
| | 이자수입 | 33,274,430 | 1% | 495,780 | 0.02% | 47,201,550 | 1.9% |
| | 기타수입 | | | | | | |
| | 합 계 | 2,108,062,037 | 100% | 2,202,686,417 | 100% | 2,497,220,667 | 100% |
| | 비융자성사업비 | 214,667,400 | 10% | 106,456,300 | 5% | 491,681,890 | 19.7% |
| | 융자성사업비 | | | | | | |
| | 인력운영비 | | | | | | |
| | 기본경비 | | | | | | |
| 지 출 | 예탁금 | | | | | | |
| | 예치금 | 1,893,394,637 | 90% | 2,096,230,117 | 95% | 2,005,538,777 | 80.3% |
| |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
| | 기타지출 | | | | | | |

농어업소득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삼척시 조례 제636호)
 - 설치 및 조성 목적 : 삼척시 농어업인에 대한 경쟁력확보 및 농어가 소득향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 설치 연도 : 2009년도(2009.01.05. 조례 제636호 제정)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 ′18년말 | '19년도 운용현황 | | ′19년말 | '20년도 운용계획 | | मी न | | |
|-------|------------|----|-------|------------|-----|------|-----|----|
| 조성액 | 수입 | 지출 | 증감 | 조성액 | 수입 | 지출 | 증감 | 비고 |
| 1,236 | 55 | - | 55 | 1,292 | 233 | 300 | △67 | |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저소득 농어가 융자지원 : 0농가
 - '19년도 수입 : 55백만원
 - ・ 융자원금회수(이자포함) : 39백만원
 - · 이자수입 : 16백만원
- 기금의 존치필요성
 - 현재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은 융자지원대상 · 융자지원방법 · 융자사업목적 · 융자취급사무소 등 동일한 사업목적 으로 운영하고 있음

- 농어업소득기금은 1985년(33년 경과) 시행당시 저소득층에게 무이 자로 지원하였으나, 체납 누적으로 기금운용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2009년부터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으로 기금 운용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 조례에 근거하여 농협중앙회 삼척시지부에 위탁 운영결과 농림 수산업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대출, 담보대출, 후취 담보대출 중 택일로 체납율은 낮추었으나, 사업신청이 저조하여 2017년 도부터 융자실행이 없고, 2018년도에는 신청자 5명(실제융자실행 2명), 2019년, 2020년에는 신청자가 없으므로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 | ′18년도 | | ′19년도 | | |
|------|-------|-----|-------|------|----|
| 당초계획 | 집행실적 | 비율 | 당초계획 | 집행실적 | 비율 |
| 300 | 37 | 12% | 300 | -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가공시설등의 지원을 통한 자립여건 조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 구 분 | 사업계획 | 사업실적 | 달성도 |
|------|----------------|---------------|-----|
| | ○ 기금융자사업 | ○ 기금융자사업 | |
| '18년 | - 융자액 : 300백만원 | - 융자액 : 37백만원 | 12% |
| | - 사업자 : 10명 | - 사업자 : 2명 | |
| | ○ 기금융자사업 | ○ 기금융자사업 | |
| ′19년 | | - 융자액 : 0원 | 0% |
| | - 융자액 : 300백만원 | - 사업자 : 0명 |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설치근거 | 설치목적 | 주요사업 내용 | 비고 |
|--|---|-----------------------|----|
|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2009.01.05. 조례 제636호 제정) | 농어업인에 대한 경쟁력 확보 및 농어가소득향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융자 지원하기 위함 | - 수산 : 양어장, 양식어업, 어구. | |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18년 융자금 대출 신청자 5명 (2명 선정, 1명 선정제외, 2명 포기)
 - 19년 융자금 대출 신청자 1명 (1명 선정, 1명 포기)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 구 분 | | 지 적 내 용 | 비고 |
|--------------|-------|----------|--------|
| フレスフレン | ′17년 | 해당없음 | |
| 기정시하 기정시하 | ′18년 | 해당없음 | |
| 지적사항 | ′19년 | 성과분석 미심의 | 강원도종합사 |
| 기금운용 | 성과분석에 | 해당없음 | |
| 대한 결과(권고조치) | | ण ठ भ न | |
| 7] | 타 | 해당없음 |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농림어업이 주업인 종사자층의 고령화로 기금수요의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소득기반이 빈약한 가구(소유농지 1ha미만 경작 또는소 10두 미만 사육가구 또는 이에 준하는 농어가)에서의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따름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사 업 명 | '20년 사업비 | 존치 필요성 | 불가피성 정도 |
|-----------|-----------|---|------------|
| ① 농어업소득기금 | 300,000천원 | 농림어업 종사자의 고령화로 기금수요의 감소추세로 기금목적의 효율성 성취도가 낮음. 기 대출금회수 및 체납정리후 기금을 폐지함이 타당함. | ŏ } |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 사업명 | 금액 | 비고 |
|------|---------|--------------------------------|-------|
| 타 기금 | エのタムショー | 개인:10~300백만원 단체:50~1,000백만원 | 강원도기금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운용수익금 및 주민소득융자금 귀속분 등으로 재원 조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삼척시 농어업인에 대한 경쟁력확보 및 농어가 소득향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저소득농어가의 자립 여건 조성을 위해 본 기금을 운용하여 왔으나, 소득기반이 빈약한 가구(유농지 1ha미만 경작 또는 소 10두 미만 사육가구 또는이에 준하는 농어가)의 고령화로 추세로 수요층이 점차 감소됨에 따라 지속적인 기금운용이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기 대출금 상환 및 체납액 정리 후 본 기금을 폐지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원)

| 구 분 | | ′17년 | | ′18년 | | (단위 : 원 '19년 | |
|-----|-----------------|---------------|------|---------------|------|-----------------|------|
| | 합 계 | 1,240,030,899 | 100% | 1,274,932,026 | 100% | 1,291,673,708 | 100% |
| | 전입금 | | | | | | |
| | 보조금 | | | | | | |
| | 차입금 | | | | | | |
| 수 입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53,184,130 | 4% | 22,181,628 | 2% | 38,736,620 | 3%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
| | 예치금회수 | 1,175,444,611 | 95% | 1,240,030,899 | 97% | 1,236,907,294 | 96% |
| | 예수금 | | | | | | |
| | 이자수입 | 11,402,158 | 1% | 12,719,499 | 1% | 16,029,794 | 1% |
| | 기타수입 | | | | | | |
| | 합 계 | 1,240,030,899 | 100% | 1,274,932,026 | 100% | 1,291,673,708 | 100% |
| | 비융자성사업비 | | | 1,024,732 | 1% | | |
| | 융자성사업비 | | | 37,000,000 | 3% | | |
| | 인력운영비 | | | | | | |
| | 기본경비 | | | | | | |
| 지 출 | 예탁금 | | | | | | |
| | 예치금 | 1,240,030,899 | 100% | 1,236,907,294 | 97% | 1,291,673,708 | 100% |
| |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
| | 기타지출 | | | | | | |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2004년도(조례제정일 2004.05.18. 조례 제458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 ′18년말 | ′19년도 운용현황 | | ′19년말 | '20년도 운용계획 | | धो न | | |
|-------|------------|----|-------|------------|----|------|----|------|
| 조성액 | 수입 | 지출 | 증감 | 조성액 | 수입 | 지출 | 증감 | H 1/ |
| 195 | 7 | - | 7 | 203 | 10 | - | 10 | |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기금사업 목표 조성액(3억원) 미만으로 지출 계획 없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 ′18년도 | | | ′19년도 | | |
|-------|------|----|-------|------|----|
| 당초계획 | 집행실적 | 비율 | 당초계획 | 집행실적 | 비율 |
| - | - | - | - | -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사업목표 :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
- 삼척시 기금사업 적립 목표액(3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지출 계획 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설치근거 | 설치목적 | 주요사업 내용 | 목적 달성 정도 | 비고 |
|--------------|-----------|----------------|----------|----|
| · 식품위생법 제89조 | | | | |
| · 삼척시식품진흥기금 | 식품위생과 시민의 |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 67% 달성 | |
| 설치 및 운용조 | 영양수준 향상 |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 (목표액 3억) | |
| 례(제458조) | | | | |
| | | | | |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 적립목표액(3억원) 달성까지 지출계획 없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 사 업 명 | '20년 사업비 | 존치 필요성 | 불가피성 정도 |
|----------|----------|------------------------------|---------|
| 식품진흥기금사업 | - | 기금적립목표액(3억원) 달성까지 지출계획 없음 | 중 |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 : 식품위생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과징금, 적립금, 예치금 이자)
- 식품위생법 제89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및 예금이자로 재원 조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 적립목표액(3억원) 도달시까지 지속 적립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원)

| 구 분 | | ′17년 | <u> </u> | ′18년 |] | ′19년 | |
|-----|-----------------|-------------|----------|-------------|------|-------------|------|
| | 합 계 | 188,463,466 | 100% | 195,128,956 | 100% | 202,840,836 | 100% |
| | 전입금 | | | | | | |
| | 보조금 | | | | | | |
| | 차입금 | | | | | | |
| 수 입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
| 一 日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
| | 예치금회수 | 171,312,876 | 91% | 188,463,466 | 97% | 195,128,956 | 96% |
| | 예수금 | | | | | | |
| | 이자수입 | 2,397,590 | 1% | 2,435,490 | 1% | 3,151,880 | 2% |
| | 기타수입 | 14,754,000 | 8% | 4,230,000 | 2% | 4,560,000 | 2% |
| | 합 계 | 188,463,466 | 100% | 195,128,956 | 100% | 202,840,836 | 100% |
| | 비융자성사업비 | | | | | | |
| | 융자성사업비 | | | | | | |
| | 인력운영비 | | | | | | |
| | 기본경비 | | | | | | |
| 지 출 | 예탁금 | | | | | | |
| | 예치금 | 188,463,466 | 100% | 195,128,956 | 100% | 202,840,836 | 100% |
| |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
| | 기타지출 | | | | | |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2010년 7월 설치(조례제정일 2009. 3. 20.)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 ′18년말 | '19년도 운용현황 | | ′19년말 | ′20년도 운용계획 | | धो न | | |
|-------|------------|----|-------|------------|----|------|-----|-----|
| 조성액 | 수입 | 지출 | 증감 | 조성액 | 수입 | 지출 | 증감 | 미 ᅶ |
| 14 | 35 | - | 35 | 49 | - | 35 | △35 | |

※ 수입 및 지출내역: 2020년 옥외광고지원사업(생활 SOC 간판개선사업) 지원금 35백만원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사업 추진시 효율적인 자금조달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여 경관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문제점 및 대책

-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중 지자체에 균등 배분되던 지원 금이 2011년 5월 폐지
- 집중 배분 지원방식으로 조정됨에 따라 2018년까지 이자수입만 발생하고 재원 조정이 없는 상태였으나 '20년 옥외광고지원사업(생활 SOC 간판개선사업) 선정되어 2019년 12월 35백만원 지원받았으나 일반회계로 사업추진

○ 기금 설치목적이 적당하고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의 문제점이 없는 등 기금조성규모를 상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 조성 노력이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 ′18년도 | | | ′19년도 | | |
|-------|------|----|-------|------|----|
| 당초계획 | 집행실적 | 비율 | 당초계획 | 집행실적 | 비율 |
| - | - | - | - | - |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광고물등의 정비, 경관개선,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옥외광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
 -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기금 조성중으로 사업시행에 필요한 규 모의 기금 조성시까지 지출계획 없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 구 분 | 사업계획 | 사업실적 | 달성도 |
|------|------|------|-----|
| ′18년 | - | - | - |
| ′19년 | - | - | - |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해당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설치근거 | 설치목적 | 주요사업 내용 | 목적 달성 정도 | 비고 |
|---|---------------------------------------|------------------------------|---|----|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 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삼척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아름답고 깨끗한 도 시 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 -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 옥외광고 사업자에 | 시업시행에 필요 한 규모의 기금 조성시까지 지출 계획 없음 | |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무분별하게 설치된 광고물을 정비
 -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등을 통해 시가지 경관 조성에 기여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 구 분 | | 지 적 내 용 | 비고 |
|--------------|------|----------|----------|
| -1 7 -1 vl | ′17년 | 해당없음 | |
| 각종감사 지적사항 | ′18년 | 해당없음 | |
| 시작사% | ′19년 | 성과분석 미심의 | 강원도 종합감사 |
|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 | 해당없음 | |
| 대한 결과(권고조치) | | ण ठ भ न | |
| 기 타 | | 해당없음 |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 사 업 명 | '20년 사업비 | 존치 필요성 | 불가피성 정도 |
|-------------|----------|-----------------------------------|---------|
| ① 광고물 정비 사업 | - | | 상 |
| ② 경관개선 사업 | - | 시업시행에 필요한 규모의 기금 조성시까지 지출계획 없음 | 상 |
| 합계 | - | | 상 |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
 - 기금조성 옥외광고 수익금중 지자체에 균등 배분되던 지원금 (폐지) 및 이자수입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주변 경관 과 조화를 이루고 특색있는 간판거리 조성
-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거리 환경 정비를 위하여 기금재원 확보 및 사업 확대 필요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원)

| 구 분 | | ′17년 | <u>]</u> | ′18 ^½ | 1 | (단위 : 원 '19년 | |
|-----|-----------------|------------|----------|------------------|------|-----------------|-------|
| 수 입 | 합 계 | 13,728,680 | 100% | 13,742,360 | 100% | 48,753,460 | 100% |
| | 전입금 | | | | | | |
| | 보조금 | | | | | 35,000,000 | 71.8% |
| | 차입금 | | |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13,715,010 | 99% | 13,728,680 | 99% | 13,742,360 | 28.2% |
| | 예치금회수 | | | | | | |
| | 예수금 | | | | | | |
| | 이자수입 | 13,670 | 0.1% | 13,680 | 0.1% | 11,100 | 0% |
| | 기타수입 | | | | | | |
| | 합 계 | 13,728,680 | 100% | 13,742,360 | 100% | 48,753,460 | 100% |
| | 비융자성사업비 | | | | | | |
| | 융자성사업비 | | | | | | |
| | 인력운영비 | | | | | | |
| | 기본경비 | | | | | | |
| 지 출 | 예탁금 | | | | | | |
| | 예치금 | 13,728,680 | 100% | 13,742,360 | 100% | 13,753,460 | 28.2% |
| |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
| | 기타지출 | | | | | 35,000,000 | 71.8% |